

[부록1]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규정

제 정 : 2018. 4. 20.
개 정 : 2022. 7.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장 소속 하에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총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교원 3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의 경우 교무부장 1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③ 교원 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유치원장이 임명한다.
- ④ 학부모 위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임명한다.
-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평가관리자(교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⑧ 제1항과 2항의 위원 수 또는 학부모 위원의 비율은 당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당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안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유치원 시행 계획
 - 나.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 평가 내용, 방법, 절차, 시기
 - 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조사 문항 및 평가 양식의 실정에 관한 사항
 - 라. 평가종류별, 평가대상자별, 평가영역별, 평가자의 할당에 관한 사항
 - 마.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열람에

관한 사항

- 사. 단위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진단 및 평가 결과 분석
 - 아.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나.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 개선과 관련한 유치원 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 다.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5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는 유치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